

No. 44

CFE Report

2008. 5. 30

한미 FTA 협정 내용, 경제효과
및 정책시사점

정 인 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자유기업원

<요 약>

쇠고기 검역기준 파동으로 한미 FTA 국회비준이 지연되고 있다. 17대 국회 다수당인 통합민주당이 쇠고기 검역기준 협상결과를 한미 FTA 협정 비준과 연계시킴에 따라 한미 FTA의 비준은 18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었다. 정치권의 쇠고기 검역기준 반대는 한미 FTA 비준을 방지하기 위한 전술전략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어 18대 국회에서도 비준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지난해 여당이었던 (구)열린우리당이 타결했던 협정의 비준을 지연시키는데 따른 통합민주당의 부담도 커질 것이다.

한미 FTA의 경제효과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일부에서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협정 내용 전체를 종합해보면 국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협정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한미 FTA가 이행될 경우 우리나라 GDP는 6.0% 증가하고, 국내 일자리가 30~40만개와 20조원의 소비자혜택이 예상된다. 반면, 비준이 지연되면 연간 15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기존 연구의 한미 FTA 경제이익 추정치는 협정의 일부 내용만을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비스와 투자환경 개선, 경제통상제도 선진화, 사회의 투명성 제고 등으로 인한 경제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협정 체결 이후 단기간내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는 수출증가가 될 것이다. 미국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상당한 대미 수출 증가를 예견하지 않을 수 없다. 나머지 경제효과는 시간을 두고 서서히 나타나게 될 것이며, 우리 경제 및 비즈니스 환경도 선진화될 것이다.

만약 한미 FTA가 제때 이행되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 15조원의 기회비용에 한정될 것인가? 한미 FTA에 포함된 제도개선 사항들

이 사장되면서 국내의 개혁적 분위기가 약화될 것이다. 정치와 여론이 경제를 가로막는 현상이 고착화되면서, 각종 이해집단들이 정치경제적 목적을 위해 여론을 주도해 나가게 될 것이고 개혁개방정책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특히 촛불집회의 일상화가 우려된다. 또한 한미 FTA로 인해 촉발되었던 한-EU FTA 협상도 부진해질 것이며, FTA 정책 전반의 추진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아쉽지만, 18대 국회는 한미 FTA 비준처리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한미 FTA 논의를 원점에서 시작한다면 금년말 비준도 어려울 것이고, 국론분열적 상황은 내년까지 연장될 것이다. 이미 17대 국회가 한미 FTA 협상의 모든 진행과정을 감시하고, 견제해 왔다. FTA 문제의 소관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만으로는 모자라서 특위까지 만들고 협상기간 내내 특위를 가동시켜 왔다. 한미 FTA 관련 공청회 토론회가 21차례, 국회 내 한미 FTA 특위가 28차례 공청회를 가졌을 만큼 한미 FTA에 대해 충분한 토론을 거쳤다.

일부에서는 사전 검토없이 한미 FTA 협상이 졸속으로 결정된 것으로 비난하고 있으나, 1990년대 중반 검토가 시작되었고,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미 관계의 속성상 일방이 FTA 추진을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부진했을 수 있으나, 연구와 준비없이 협상을 시작했다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 협상결과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18대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국민 대부분은 한미 FTA에 대해 나름대로의 평가를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보와 식견을 가지고 있다. 이제 와서 더 이상 들추어 낼 것도 없고, 모든 의혹은 제기할 만큼 제기했고, 경제효과와 예상되는 충격에 대한 논란도 할 만큼 했다. 정부는 2007년 9월 17대 국회에 제출했던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가급적 빠른 시간에 국회에 다시 제출해야 하고,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상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18대 국회에서 야당과 反FTA 진영은 쇠고기 문제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면서 한미 FTA 보완대책 강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한미 FTA 체결시 손실을 볼 수 있는 계층이 분명 존재하는 만큼 정부도 보완대책 마련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지원규모를 조정하되, 지원과정에 도덕적 해이와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예산 속성상 책정된 예산을 당해 년도에 집행하려는 유인이 있으나, 집행되지 않은 FTA 예산은 기금 형태로 적립하여 향후 구조조정 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I. 한미 FTA 추진과정

- 한미 FTA는 1980년대 중반에 처음으로 비공식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이후 1980년대말, 2000년대초, 2004년에도 양국간 공식 및 비공식 협의가 진행된 바 있음
 - 1996년 처음으로 개방과 개혁 전략 차원에서 한미 FTA 연구가 추진되었으나, 반개방적 정서로 인해 공론화되지 못함.
- 2004년 칠레와 체결한 협정을 이행한 이후 미국과의 FTA 추진을 본격적으로 검토하였고, 2006년 중반 협상을 시작하여 이듬해 4월 타결

1. 1980~1990년대 논의

- 한미 FTA 비공식협의를 198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1984년 4월 당시의 USTR 대표였던 브록(Brock)이 내한하여 비공식적으로 한-미 FTA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타진
 - 1985년 5월 머피(Murphy) GATT주재 美 대사와 1988년 1월 알가이어(Allgeier) USTR 대표도 한-미 FTA 체결을 역설
- 1989년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아태지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동아시아지역 국가 중 미국에게 바람직한 FTA 대상국가로 싱가포르, 한국, 대만을 지정
 - USITC 보고서를 계기로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FTA 체결과 관련한 연구를 처음으로 시작
- 무역협회·산업연구원(1989)의 연구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했으나, 우리나라에서의 FTA 논의는 지속되지 못했음.
 - 당시 미국측의 한·미 FTA 추진 필요성 언급을 미국의 대한국 시장개방 압력 수단으로 인식했고,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우루과이라운드 농업양허안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FTA 논의는 사실상 중단
- WTO 출범 직후인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시절 세계화추진위원회는 한미 FTA를 비롯한 우리나라 FTA 정책 연구를 경제통합분야 전문가에게 의뢰
 - 이 연구에서 처음으로 개방 및 개혁 전략의 일환으로 한미 FTA를 검토하게 되었음.1)

- 1998년 칠레와의 FTA를 검토하면서 한미 FTA 추진도 내부적으로 거론되었으나, FTA 협상 노하우와 경험이 없던 우리 정부는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와의 FTA가 바람직한 것으로 결론(1998년 11월 5일 제1차 대외경제조정회의)
 - 즉, 우리 정부가 FTA를 추진하되, 칠레를 첫 FTA 대상국으로 선정하며, 한칠레 FTA를 타결한 후 일본,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추진할 것임을 정부 차원에서 공식결정

2. 2000년 이후 논의

- 2001년 1월 하와이에서 개최된 제14차 한·미재계회의는 양국간 BIT 조기 타결과 한미 FTA 논의 촉구
- 2001년 USITC 연구진이 한미 FTA를 분석하자,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대응연구를 추진하였고, 2001~2002년 한미 양국에서 양국간 FTA 논의가 독자적으로 진행
 - 한편, 2002년 중반 칠레와의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 정부는 한칠레 FTA 이후의 FTA 추진방향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
- 2003년 집권한 신정부(참여정부)는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FTA 추진에 관심을 보였고, 2003년 8월말 한미 FTA 추진을 포함한 “FTA추진로드맵” 확정
 - 동 로드맵에 따르면, 당시 FTA 정부간 논의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던 일본, 싱가포르 등과의 FTA를 단기추진대상으로, 미국, EU,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는 중장기적으로 추진 결정
- 한미 FTA 경제성을 검토한 참여정부는 2003년 말부터 한미 FTA 추진 가능성을 미국 측에 공식 및 비공식 타진
 - 하지만, 미국은 당시 협상이 중단되었던 투자협정(BIT)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BIT보다 범위가 넓은 FTA 추진은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 제시
- 우리나라 외교통상관계자들이 미측을 적극 접촉하여 2004년 11월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던 칠레 산티아고에서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양국간 FTA 추진 가능성 점검을 위한 사전실무점검회의 개최 합의

1) 연구의 일부는 왕윤중·정인교(1998)에 제시되어 있음.

- 다음해인 2005년 양국의 통상관계자 및 전문가를 주축으로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를 3차례 개최하게 되고, 양측은 FTA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

<표 1> 한미 FTA 추진일정

	일자	행사명	개최 장소
협상 전 단계	2003.08.30	FTA추진로드맵 확정	
	2004. 11. 19	한미 통상장관회의, 한미 FTA 검토 합의	산티아고
	2005.02.03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 1차 회의 개최	서울
	2005.03.28~29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 2차 회의 개최	워싱턴
	2005.04.28~29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 3차 회의 개최	워싱턴
	2005.02~2006.11	6차례 한미 통상장관회의 개최	제네바 등
	2005.09	미국, 한국 등 4개국을 FTA우선협상대상국 선정	워싱턴
	2006.03~04	2차례 한-미 FTA 비공식 사전준비협의	워싱턴, 서울
협상 단계	2006.06.05~09	한-미 FTA 제 1차 공식협상 개최	워싱턴
	2006.07.10~14	한-미 FTA 제 2차 공식협상 개최	서울
	2006.09.06~09	한-미 FTA 제 3차 공식협상 개최	시애틀
	2006.10.23~27	한-미 FTA 제 4차 공식협상 개최	제주
	2006.12.04~08	한-미 FTA 제 5차 공식협상 개최	몬타나
	2007.01.15~19	한-미 FTA 제 6차 공식협상 개최	서울
	2007.02.11~14	한-미 FTA 제 7차 공식협상 개최	워싱턴
	2007.03.08~12	한-미 FTA 제 8차 공식협상 개최	서울
	2007.03.26~4.1	통상장관급 협상	서울
	2007.04.02	협상 최종 타결	서울
서명	2007.06.30	협정문 공식서명	서울
	2007.09.07	우리 정부, 협정 국회 비준안 제출	서울

- 산티아고 통상장관 협의 및 2005년 3차례 한미 FTA 실무협약에 대해서는 언론에 널리 보도되었고, 협상 개시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널리 유포되었음.
- 2005년 개최된 한-미 FTA 실무회의에서 협정의 전체 구조 및 분야별 내용에 대해 상호의견 교환이 있었고, 실무자들은 동 FTA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진 필요성 보고
 - 이 시기에 한미 통상장관들은 6차례 회동을 가졌고,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주요 상하원의원, 정부관계자, 업계와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미 FTA 추진에 대한 설득 작업 진행
 -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도 미국측 파트너와의 접촉을 통해 한미 FTA 추진 분위기 개선

3. 2006년 이후 추진

- 2006년 들어 한미 FTA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
 - 2006년 1월 대통령의 새해연설에서 한미 FTA 추진 필요성 및 추진의지를 국민들에게 밝혔고, 2월 3일 워싱턴 미 상원의사당에서 한미 양국의 통상장관들은 양국간 FTA 공식추진 발표
- 무역촉진권한(TPA)에 따른 시한이 촉박했던 미국은 연초 협상 개시를 희망했으나, 2006년 5월 31일 실시 예정이던 우리나라의 지방선거로 인해 공식협상은 6월에 개시
 - 양측은 협상시한에 대해 명시적으로 합의한 바 없으나, 미국의 TPA 권한이 유효한 상황에서 협상을 타결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가급적 2007년 3월말까지 협상을 타결한다는 입장 공유
 - 2007년 3월말까지 총 8차례의 협상을 통해 양국간 FTA 협상을 타결한다는 방침하에 거의 매달 협상
- 다른 FTA 협상에서는 통상 2~3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고 협상이 진행되었지만, 한미 FTA는 매일 협상구도로 진행되었고, 매 협상마다 4~5일간 협상을 정례화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다른 FTA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

- 2007년 3월 총 8차 협상을 종료했으나 양측은 자동차, 섬유, 농업 등에서 입장차이를 줄이지 못했고, 3월말 통상장관회의를 통해 최종 타결의 수순을 밟게 되었음.
 - 4월 2일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으나, 미국 행정부와 의회간 신통상정책 합의로 한미 FTA 협정은 추가협상을 6월 실시하였고, 6월 30일 양국 통상장관들은 한미 FTA 협정을 공식서명
- 우리 정부는 9월 협정문에 대한 국회비준을 공식 요청하였음.

II. 한미 FTA의 주요 내용

- 한미 FTA는 포괄적이며, 수준 높은 협정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향후 FTA 체결시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외국도 많이 참고하는 협정이 될 것임.
- 여기서는 협정의 내용을 관세분야(제조업, 농업), 무역제도분야(통관, 정부 조달, 무역구제, 특허권 등), 서비스투자분야로 나눠 논의

1. 관세분야

- 전통적으로 관세분야는 FTA 협상에서 최대 쟁점으로 작용하며, FTA 경제효과 분석에 있어서도 일차적인 분석대상
 - 관세분야는 비교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계량적 분석이 가능하며, 협정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데 널리 활용
- 한미 FTA는 제조업 100%, 농업분야 99.9%의 자유화율을 기록했는데, 관세인하 범위가 최고 수준인 것으로 평가
 - 호주-뉴질랜드 협정(CER), 미-칠레 FTA에서와 같이 100% 전면적인 관세 철폐를 규정한 협정도 있으나, 이를 제외하면 100% 관세를 철폐하는 협정은 많지 않음.

<표 2> 우리나라 FTA에서의 관세인하 범위

구분	협정	비 고
발 표 타 결	칠 레	2004년(양허율 99.8%:공산품 100, 농산품 98.5%)
	싱가폴	2004년(양허율 91.6%:공산품 97.4, 농산품 66.6%)
	EFTA	2006년(양허율 98.5%:공산품 99.7, 농산품 34~58%)
	아세안 9개국	2007년(양허율 99.1%:공산품 100, 농산품 93.2%)
	AFTA 4개국	2006년(특혜비율 14~35.7%:수입비율 6.1~52.7%)
타 결	미 국	양허율 99.9%: 공산품 100, 농산품 99.9%

주 : AFTA(구 방콕협정)는 관세철폐가 아닌 관세감축방식

- 농산물 양허협상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예외적 취급 범위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 농업협정문 내용은 상호 입장을 절충해 수입쿼타(TRQ) 관리, 농산물 세이프가드에 관한 규범을 마련
 - 쌀을 포함하여 전체 품목의 10% 이상이 예외적 취급을 받거나 15년 이상의 관세철폐 기간 확보(수입액 기준 25% 이상)하였는데,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은 품목은 즉시철폐에서 10년까지 철폐기간을 차별화
 - 단, 국내 영향이 없거나 이미 수요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은 관세를 즉시철폐
- 한미 FTA에서 양국은 쌀(한국)을 제외한 거의 전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혹은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합의.
 - 오렌지 등 농산물 일부에 대해서는 계절관세를 도입함으로써 계절관세가 적용되는 기간에는 현행 관세가 유지

<표 3> 주요 관심품목의 양허유형 구분

양허유형	주요 품목
양허제외	쌀
현행관세, 수입쿼타	오렌지(성출하기), 식용 대두, 식용감자, 탈지·전지분유, 연유, 천연꿀
계절관세	포도(성출하기 17년, 비출하기 5년), 스낵용 감자(출하기 7년 유예 후 8년, 비출하기 즉시철폐)
장기철폐, 세번분리	사과(후지 20년, 기타 10년), 배(동양배 20년, 기타 10년)
장기철폐, 세이프가드	쇠고기(15년), 돼지고기(냉장 2개, 10년), 고추·마늘·양파(15년) 인삼(18년), 보리(15년), 맥주맥·맥아(15년), 전분(10~15년)
15년	호두(미탈각), 밤, 감귤, 송이버섯, 표고버섯, 필터담배
12년	닭고기(냉동가슴살, 날개), 냉동양파, 수박, 보조사료
10년	복숭아, 감, 단감, 감귤주스, 잎담배, 자두
6~9년	신선 딸기(9년), 맥주·아이스크림·살구·팥콩용옥수수·아이스크림(7년), 돼지고기(2014.1.1, 기타), 호두(탈각)·옥수수유(6년)
5년 이내	완두콩·감자(냉동)·토마토주스·오렌지주스·위스키·브랜디(5년), 해조류(3년), 아보카도·레몬(2년)
즉시 철폐	오렌지 주스(냉동), 산동물, 화훼류, 커피, 포도주, 밀, 사료용 옥수수, 채유용 대두, 아몬드

주: 괄호안의 숫자는 관세철폐기간

자료: 농림부(2007) “한·미FTA 농업부문 협상결과와 대응방안”

- 제조업의 경우, 즉시철폐비율이 84% 내외가 되고, 10년내 관세가 전면 철폐
- 한미 양국은 상품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수입액기준 약 94% 품목의 조기(3년내) 철폐에 합의
 - 산업자원부(2007)는 한미 FTA 체결시 우리 제품의 미국시장 진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
 - 단기간내 시장 점유율 확대가 예상품목으로 승용차, LCD모니터, 캠코더, TV, 카메라, 오디오앰프, 폴리스티렌, 금속절삭가공기계, 이어폰, 예폭시수지, 칼라TV 등임.

<표 4> 제조업에 대한 한미의 양허단계별 주요 품목

() : 관세율

	우리측	미측
즉시	승용차(8), 자동차부품(3~8), 크실렌(5), 통신용광케이블(8), 항공기엔진(3), 에어백(8), 전자계측기(8), 백미러(8), 디지털프로젝션TV(8) 등	3,000cc 이하 승용차(2.5), 자동차부품(1.3~10.2), LCD모니터(5), 캠코더(2.1), 귀금속장식품(5.5), 폴리스티렌(6.5), 컬러TV(5), 기타신발(8.5), 전구(2.6), 전기앰프(4.9) 등
3년	요소(6.5), 실리콘오일(6.5), 폴리우레탄(6.5), 치약(8), 향수(8), 골프채(8) 등	DTV(5), 3,000cc 초과 승용차(2.5), 컬러TV(5), 골프용품(4.9), 샹들리에(3.9) 등
5년	고주파증폭기(8), 알루미늄판(8), 안전면도날(8), 환자감시장치(8), 면도기(8), 조제세제(6.5), 헤어린스(8), 바다가재(20) 등	타이어(4), 가죽의류(6), 폴리에테르(6.5), 스피커(4.9) 등
10년	기초화장품(8), 페놀(5.5), 초음파 영상진단기(8), 볼베어링(13), 콘택트렌즈(8) 등	전자레인지(2), 세탁기(1.4), 폴리에스테르수지(6.5), 모조장신구(11), 베어링(9), 섬유건조기(3.4), 화물자동차(25) 등
10년 비선형	파티클보드(8), 섬유관(8), 합판(12) 등	세라믹타일(8.5/10), 철강(4.3~6.2)
10년 이상		특수신발(20~55.3)

2. 무역제도분야

가. 통관절차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2008년초 발간한 '주요 수출시장의 비관세장벽(NTBs) 현황'에 따르면, 통관절차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 가장 심각한 비관세장벽으로 지적
 - 미국의 비관세장벽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9·11테러 이후 미국은 컨테이너안전점검(CSI)과 같이 통관을 지연시킬 수 있는 조치를 도입하였고, 이로 인해 수출입 물류비가 우리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
- 한미 FTA를 통해 신속통관과 물류비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
 - 공항, 항만에서 상품도착후 48시간내 신속통관을 약속하였고, 통관과 관련된 자국의 관세법, 규정 및 일반 행정절차를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표하기로 함.
 - 또한 자국 세관당국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수입자가 상품을 세관으로부터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도 도입되며, 상품의 통관 및 이동을 간소화하는 평가 및 선별을 위한 전자 또는 자동화된 위험관리시스템을 채택

나. 정부조달

- 미 조달시장 규모는 2005년도 기준으로 연방정부 부문만도 약 3,800만달러에 달하는 등 전체 조달시장규모가 약 1조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이번 협상 타결로 확대 개방된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의 규모도 약 6조원(구 재정부 추정)에 이를 것으로 우리 조달청은 평가
- 한미 양국은 중앙(연방)정부 상품, 서비스 양허하한선(Threshold :개방하한금액)을 미국은 WTO 정부조달협정상 개방 수준인 현행 약 20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우리나라는 약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미국 정부조달 시장의 개방폭이 상당 부분 확대되었음.
- 미국은 협상 과정에서 주정부의 경우 현행 WTO 정부조달협정상의 양허수준을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이에 대응하여 지방정부 뿐 아니라 공기업까지 배제

- 단, 지방정부 및 공기업을 한미 FTA에서 양허배제 하더라도 WTO 정부조달 협정에 따라 미국의 주정부(37개) 및 공기업(6개) 조달시장은 이미 개방되어 있음.

다. 무역구제

-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2005)의 자료에 따르면, 이들 국가 중 미국은 가장 제소를 많이 하는 국가이고, 우리나라는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반덤핑 피소를 많이 당하는 국가(2005년 현재 세계 2위).²⁾
- 무역구제는 한미 FTA 협상에서 첨예하게 입장이 엇갈린 분야이었고, 양국의 이해관계가 고루 반영된 내용으로 타결
- 가격 또는 물량합의제도를 통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사과정에서 우리 수출자 또는 정부가 수출상품의 가격 또는 수출물량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면, 미국 조사당국이 이를 적절히(adequate) 고려하고 우리측에 충분한 협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합의
 - 협의를 통해 수출가격 또는 수출물량에 대해 양측이 합의하면 반덤핑·상계관세조사가 종결
- 다자세이프가드 조치대상에서의 면제 가능성도 협정문에 반영
 - 다자세이프가드 발동시 상대국의 수출품이 끼치는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발동 대상에서 상대국을 면제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사전통지 및 협의의무로 반덤핑 조사전 단계에서부터 대응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
- 한미 양국은 반덤핑조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 조사개시 이전에 상대국에 통보하고 동시에 협의 또는 이와 유사한 기회를 부여하므로, 미국 기업의 일방적인 제소로 인한 피해 방지 장치 마련

2) 아래 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반덤핑 제소보다는 피소를 많이 당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반덤핑 제소 및 피소 추이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합계
제소	4	13	15	3	6	2	4	9	18	3	77
피소	14	11	15	24	34	22	23	23	17	24	207

자료: 산업자원부(2005) “최근의 통상환경 및 무역구제제도”. 무역위원회. 11월

라. 지적재산권

- 기술과 지식 등 무형자산이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기반 경제(KBE)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식 창출 및 확산을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
- 한미 FTA 지적재산권 내용은 부분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으나, 대체로 우리 제도 선진화 및 지식재산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
 -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되 2년의 유예기간을 두었고, 불합리한 특허등록 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하는데 합의
 - 저작권,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손해배상의 하한선을 사전에 법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 특허청(2007)에 따르면,³⁾ 한·미 FTA 산업재산권 협상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산업재산권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

3. 서비스 및 투자 분야

가. 서비스

- 서비스 협정문은 모든 서비스 분야를 협정문 적용 대상으로 설정하되, 사행성 게임을 포함한 도박 서비스, 금융서비스, 항공운송 서비스, 정부조달·정부보조금·정부제공 서비스 등은 제외
 - 유보안의 작성 범위와 관련한 협상에서 지방정부 조치가 문제로 대두되었고, 미국의 주정부 비합치 조치는 현재유보(Annex I)로 기재되어 자유화 후 퇴방지 메커니즘(Ratchet)이 적용되는 것으로 합의
- 금융분야의 경우, 재보험, 항공보험, 수출입적하, 해상보험 등 4개 분야 국경간 보험중개업 허용
 - 신용평가사의 경우 국경간 거래는 제한하되 국내에 진출할 경우 허가조건을 완화해주기로 하였고, 신금융상품의 경우 건별 감독당국 심사/허가

3) 특허청(2007), “한미 FTA 산업재산권 분야 협상결과”. 국제협력팀.

하에 개방하기로 합의하고 국경간 거래에서 국내에 충격이 클 수 있는 소매금융은 제외하기로 합의

- 또한 국내 전문직서비스(법무·회계·세무)를 단계적으로 개방
 - 미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국내에서 국제공법 및 미국법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3단계로 허용하며, 회계사·세무사의 경우도 유사하게 2단계 개방
- 국내 방송서비스도 부분적으로 개방되었으나, 방송 3사에 대한 영향은 전혀 없음
 - 지상파, 위성방송, 케이블사업자(SO)의 인·허가제도·외국인투자 지분 한도·방송쿼터 등에 대해 현행 규제수준을 유지(현재유보)
 - 다만, 바둑, 낚시 등 방송채널사용사업(PP, 지상파 방송은 해당 없음)을 일부 자유화하였는데, PP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은 직접투자 한도를 현행 49%를 유지하고, 다만 국내법인 설립을 통한 PP 투자는 현행 50%를 100%까지 허용(발효후 3년내)
 - 방송쿼터에 대해서는 PP 등에 적용되는 국산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방송쿼터”) 완화

나. 투자

- 수용 및 보상(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에 대해, 정부는 1)공공목적 위해 2)비차별적인 방법으로 3)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자의 재산을 수용 및 국유화할 수 있으나, 신속·적절·효과적으로 수용 당시의 공정한 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으로 보상할 것을 규정
 - 또한 직접수용과 동등한 정도로(equivalent) 재산권을 침해하는 간접수용에 대해서도 정당한 보상을 제공할 것을 규정
 - 간접수용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체결한 모든 FTA 및 대부분의 투자보장 협정을 포함한 전 세계 투자협정에 일반적으로 포함
-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는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 의무, 투자계약 또는 투자인가를 위배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내법원 제소 또는 국제중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III. 한미 FTA의 경제효과

- 여러 기관 및 개인 연구자들이 한미 FTA 협상결과를 평가하고, 대체로 긍정적인 분석결과를 제시
 - 열린우리당, 한나라 등은 물론이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7), 정인교(2007) 등 다수 기관 및 연구자들은 한미 FTA 경제효과를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민주노동당(민노당), 한미FTA반대범국민본부(범국본) 등의 단체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음.

1. KIEP 추정치

- 2006년 협상 개시를 앞두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CGE모형을 이용한 한·미 FTA 경제효과 분석결과 발표
 - 단기 정태효과 0.42%(GDP), 자본축적 고려시 1.99%, 자본축적 및 생산성 가정시 최고 7.75%가 될 것으로 추정
- 2007년 타결된 협정 내용을 활용하여 KIEP는 한·미 FTA 경제효과 재추정
 - 미국과의 FTA가 이행되면, 단기적으로 GDP 0.32% 증가하고, 생산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GDP는 최고 5.97% 증가할 전망

<표 5>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국책 연구기관

구분 (증가분임)	KIEP 2006/1/18, 2006/3/3			KIEP 2006/3/23	KIEP의 10기관 참여 2007/4/30		
	단기 정태효과	자본축적모형		자본축적 모형 생산성고려	단기 정태효과	자본축적모형	
		생산성 미고려	생산성 고려			생산성 미고려	생산성 고려
실질GDP	0.42% (29억\$)	1.99% (135억\$)	7.75% (352억\$)	7.21% (326억\$)	0.32%	1.28%	5.97%
후생수준	0.61% (24억\$)	1.73% (68억\$)	6.99% (281억\$)	6.61% (263억\$)	0.43% (17억\$)	1.00% (40억\$)	5.23% (209억\$)

2. 민노당의 추정치

- 한미 FTA가 타결된 이후 작성된 민주노동당(민노당)의 “한·미 FTA 경제·법제도 영향 평가”는 기본적으로 협상에서 합의된 산업별 관세인하에 기초
 - 시나리오 1에서는 협상에서 관심이 높았던 섬의류에 대해서는 원산지기준 요건을 고려하기 위해 관세인하를 조정(현행 관세수준의 20%만의 효과 실현 가정)
 - 시나리오 2에서는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과 제조업 관세가 철폐되는 것으로 가정

<표 6> 민노당 연구의 한·미 FTA 경제효과

구분 (증가분임)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정태모형	자본축적모형	정태모형	자본축적모형
실질GDP	0.22% (1.0조원)	0.71%	0.28% (1.2조원)	0.87%

3. 경제효과 추정치에 대한 평가

- 관세철폐의 경제효과만으로 보면 KIEP와 민노당의 연구는 한미 FTA를 긍정적으로 평가
- 또한 민노당과 KIEP 연구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평가
 - 비록 두 연구 모두 GTAP 모형을 사용하였으나, 추정에 사용된 관세율과 서비스업 관세할당치의 차이로 설명이 가능
 - 특히 민노당의 연구는 GTAP 데이터베이스상의 57개 산업 모두를 세분화하여 경제효과를 추정함으로써 경제효과를 하향추정
 - GTAP 데이터를 57개 산업으로 세분화해서 분석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임.
 - * 통상 CGE 모형 연구에서는 한 국가의 경제를 12~15개 산업으로 세분화하는 것이 일반적임.

<표 7> KIEP와 민노당의 한미 FTA 관세철폐 영향

(단위: GDP 대비 % 변화율)

구분	표준모형	자본축적 모형
민노당 시나리오 1	0.22	0.71
민노당 시나리오 2	0.28	0.87
KIEP 분석	0.42	1.99

자료: 민노당(2007) “한·미 FTA 경제·법제도 영향 평가”

- 경제효과 관련해서 보다 심각한 문제는 생산성 증가를 가정한 분석방법론인데, 한미 FTA 자체에 대한 평가와도 깊이 연관
 - 무역 및 서비스 개방과 제도 개선을 보는 시각에 따라 한미 FTA 경제성 평가도 달라질 수 있음.
- 시장개방을 통한 생산성 제고효과는 다수 연구에 의해 검증되고 있음.
 - 대표적인 연구로는 Lawrence and Weinstein(1999), Pavcnik(2002), Baggs et al.(2002), 우천식 외(2003), World Bank(2005), Fernandes(2006), 이시욱(2007) 등을 들 수 있음.
 - 이시욱(2007)은 우리나라의 수입관세율이 1%p 하락할 경우 개별 사업체의 생산성은 평균적으로 1.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표 8> 시장개방을 통한 생산성 증대경로

생산성 증가경로		주요 거래형태	상대국
규모의 경제 실현		수출	선·후진국
경쟁압력의 증가	비효율성의 감소	수입/직접투자	선·후진국
	기술투자의 유인 증가	수입/직접투자	선·후진국
	산업내/산업간 생산요소 이동	수입/직접투자	선·후진국
R&D 파급효과	국제간 기술이전의 증가	수입/직접투자	선진국
	수입자본재의 가격 하락	수입	선진국

자료: 이시욱(2007)

- 무역자유화가 경쟁압력을 증가시키지만, 경쟁압력은 기업들의 생산·경영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혁신역량을 배양하는 유인을 발생시키며, 국제간 기술이전의 증가와 수입자본재 가격 하락으로 연구개발(R&D) 파급이 확산
 - “우리나라 제조업의 평균관세율이 4~6% 내외임을 감안할 때, 한·미 FTA 체결의 전반적인 생산성 제고효과는 최소 0.9~1.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이시욱 2007)
 - 따라서 한미 FTA의 경제효과를 관세인하의 직접적인 무역효과만을 추정하는 것은 FTA 경제효과를 과소평가
- KIEP와 민노당의 연구의 차이점도 이러한 접근방법의 차이에 기인
 - KIEP 연구에서는 한미 FTA 협정에 포함된 투자 및 서비스 분야 자유화, 경제제도 개선 등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한 반면, 민노당 연구에서는 한미 FTA 다수 분야가 우리 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간주
- 미국과의 FTA 실제 경제효과는 계량적인 추정치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평가됨.
 - 미국이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대상국일 뿐 아니라, 양국간 교역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 우천식 외(2003)에 따르면, 한미 양국의 교역은 “품질의 차이가 있는 제품 간의 교역”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 또한 오상봉(2006)도 한미 양국이 주요 첨단기술 분야에서 많은 교역을 하고 있는데다 상호보완적인 산업내 분업성격이 강해 교역확대에 따라 높은 이익이 기대되는 반면, 피해는 반대론자의 주장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산업연구원(2006)도 이 부분에 대해 “한미 양국은 전체 산업구조 측면에서 서로가 시장개방을 통해 윈-윈 할 가능성이 큰 국제분업 체계를 갖추고 있어 미국과 우리나라가 직접 경쟁하는 분야가 많지 않다”고 분석
 - 한·미 양국의 산업은 전체적으로 볼 때 경쟁우위의 분야 및 품목이 서로 겹치지 않는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심각한 산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가운데, 양국간 교역이 보완적으로 확대됨으로써 경제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

<표 9> 한미 양국 제조업의 비교우위 분야

산업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	미국의 비교우위 분야
목재가구	중저가 가구	목재, 원자재
석유화학	범용제품	고부가가치 제품
섬유	중저가 범용제품	산업용 섬유
철강	범용제품	스크랩
통신기기	단말기	핵심부품, 통신장비
반도체	메모리	비메모리
자동차	중소형 자동차, 부품	대형 고급차
항공	항공부품	완성기
조선	상선	레저용 보트

자료: 산업연구원(2006)

- 서비스와 투자부문에 대한 개방은 우리나라 관련 분야에 부담이 덜한 분야 위주로 제한적으로 실시
 - 교육, 의료 및 사회서비스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모든 규제권한은 포괄적으로 유보
- 한미 FTA는 우리 경제제도 선진화에 큰 기여
 -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도개혁에는 반발이 제기되고, 이로 인해 개혁작업이 더디게 진행되지만, FTA에서는 자국의 개혁과제를 협정에 포함시킴으로써 신속한 제도개혁을 가능하게 만드는 장점
- 시장개방과 제도개선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단기적으로 우리 업계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분야도 다수 있음.
 -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무역조정지원제도 및 농수산분야 지원제도를 적극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확충해야
 - 단, 도덕적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기준 및 관리기능도 동시에 강화되어야

IV. 정책시사점

- 2007년 (구)열린우리당 및 한나라당은 한미 FTA 협정이 우리 국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였고,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는 2008년 4월 총선직후 한미 FTA 비준 입장 제시
 - 하지만, 4월 18일 쇠고기 검역기준 협상결과에 대한 논란으로 한미 FTA 비준은 18대로 이월
- 한미 FTA 협상 타결 직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쇠고기 검역기준을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결정에 따라 검역문제를 처리한다는 입장을 발표
 - 4월 18일 검역협상이 OIE 기준내에서 타결되었기 때문에 한미 FTA를 비준할 수 없다는 민주당은 자신들이 여당시절 약속한 사항을 뒤집는 것과 다름 아님.
- 6월 개원하는 18대 국회의 첫 과제는 한미 FTA 비준이어야 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조기비준 처리에 정치력을 집중해야 함.
- 최근 미 민주당 오바마 대선후보가 한미 FTA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미 FTA 조기비준으로 개정 가능성을 원천차단할 필요성이 있음.
- 18대 국회는 한미 FTA 비준처리를 서둘러야
 - 한미 FTA 논의를 원점에서 시작해서는 금년말 비준도 어려울 것이고, 국론분열적 상황을 연장하는 결과
 - 이미 17대 국회에서 이루어진 한미 FTA 관련 21차례 공청회 토론회와 국회 내 한미 FTA 특위가 주최한 28차례 공청회 회의록만으로도 한미 FTA를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18대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국민 대부분은 한미 FTA에 대해 나름대로의 평가를 내릴 수 있을 정도로 관련 정보와 식견을 가지고 있음.
 - 정부는 지난 9월 17대 국회에 제출했던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가급적 빠른 시간에 국회에 다시 제출해야 하고,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상정을 서둘러야 함.
- 18대 국회에서 야당과 반FTA 진영은 쇠고기 문제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면서 한미 FTA 보완대책 강화를 요구하게 될 것임.
 - 한미 FTA 체결시 손실을 볼 수 있는 계층이 분명 존재하는 만큼 정부도

보완대책 마련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임.

- 현재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지원규모를 조정하되, 지원과정에 도덕적 해이와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함.

참고문헌

[한국 문헌]

- 나성린(편저), 『한미 FTA 대한민국 보고서』, 도서출판 동행, 2007.
- 농림부, 「한·미FTA 농업부문 협상결과와 대응방안」, 2007.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06-01호. 2006.1.18.
- _____,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생산성 증대 효과 검토」, 3월 3일자 세미나 자료, 2006.
- _____ 외,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11개 국책연구기관 합동. 2007.4.30.
- 민주노동당, 「한·미 FTA 경제·법제도 영향 평가」, 연구용역과제. 2007.
- 산업연구원, 「서로 보완적 관계, '윈-윈' 가능해」, 한미 FTA 특별기획, (http://www.kiet.re.kr/kiet/main_news/brief0097.jsp). 2005.
-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최근의 통상환경 및 무역구제제도」, 2005.11.
- 이시욱, 「시장개방이 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 수입관세 인하효과를 중심으로」, KDI 정책포럼 제184호. 2007.12.
- 왕윤종·정인교, 「한-미 자유무역지대 설립의 경제적 효과」, 『한국경제의 분석과 전망』 제4권 2호, 1998.12. pp.135-188.
- 오상봉, 「한미 FTA가 주요산업에 미치는 영향」, '2006 무역학자 전국대회' 발표자료. 2006.
- 우천식 외, 「무역성과 분석」, 『한국의 산업경쟁력 종합연구』 KDI, 2003. pp. 179-218.
- 이시욱, 「경제성장 및 수출 효과」, 정인교(편), 『한미 FTA의 논쟁, 진실은?』, 2006.
- _____. 「수입관세 인하가 기업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개발연구』 29권 3호, 2007.
- 이해영, 『낮선 식민지, 한미 FTA』, 메이데이, 2006.
-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한·미 자유무역협정 바로 알려드립니다』, 정부관계부처합동자료, 2007.
- 정인교, 「한·미 자유무역지대(FTA)의 타당성과 경제적 효과」, 격월간 미주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 _____, 「한-미 FTA에 대한 미국 기업의 입장과 정책시사점」, KIEP 동향속보, 2001.5.25.
- _____, 「USITC 한-미 FTA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평가」, KIEP 오늘의 세계경제 01-44, 2001.10.15.
- _____, 「한·미 FTA의 경제효과」, 무역협회 주최 한·미 FTA 세미나 발표자료, 무역협회 국제회의실, 2005.
- _____, 「FTA 추진과 무역구조조정」, 산업자원부 주최 “제조업 등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청회” 발표자료(8월 31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 2005.
- 정인교·노재봉, 『글로벌 시대의 FTA 전략』, 서울: 해남출판사, 2005.
- 중소기업청, 「중기 기회의 땅, 해외 조달시장을 노려라」, 국정브리핑. 2007.8.20.
- 특허청, 「한미 FTA 산업재산권 분야 협상결과」, 국제협력팀. 2007.
- _____. 『2007 지식재산백서』. 2007.
- 한국무역협회·산업연구원, 『미국의 자유무역권 형성과 우리의 대응』, 한국무역협회, 1989.
- 한미FTA민간대책위원회, 『한미 FTA, 미래를 위한 선택』, 한국무역협회, 2007.

[영어문헌]

- Baldwin, R. E. and A. Venables,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Grossmand and Rogoff, eds., *Handbook of International Economics*, Amsterdam: North Holland, 1995.
- Council of Economic Advisors,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5.
- Fernandes, A.M., “Trade Policy, Trade Volume and Plant-level Productivity in Columbian Manufacturing Industrie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71, No. 1. 2006. pp.52~71.
- Lawrence, R.Z. and D.E. Weinstein, “Trade and Growth: Import-Led or Export-Led? Evidence from Japan and Korea,” NBER Working Paper No.7264, 1999.
- Schott, J., *Free Trade Areas and U.S. Trade Policy*, Institute for

- International Economics, Washington D.C., 1989a.
- _____, *More Free Trade Areas?*,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ashington D.C., 1989b.
 - _____,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A Summary Assessment", Policy Brief(PB07-7).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August 2007.
 - USITC, *The Pros and Cons of Entering into Negotiations on Free Trade Area Agreements with Taiwan, the Republic of Korea, and ASEAN, or the Pacific Rim Region in General*, Washington D.C., 1989.
 - _____, *U.S.-Korea FTA: The Economic Impact of Establishing a Free Trade Agreement (FTA)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Washington D.C, 2001.
 - _____,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Potential Economy-wide and Selected Sectoral Effects*. Investigation No. TA-2104-24. September, 2007.
 - USTR, *Recommendations on Future Free Trade Area Negotiations*, Washington D.C.,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1997.
 - World Bank, *Economic Growth in the 1990s: Learning from a Decade of Reform*, Washington, D.C., 2005.